

## 의안 검토보고

1. 발의 또는 제출자 : 대전광역시장
2. 건명 :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건요지 : 별첨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

1995. 4.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정진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995. 4.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1995. 4. 13 대전광역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5. 4. 15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1. 제 안 이 유

주택조합을 구성하여 주택을 구입함에 있어 주택조합이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 주택조합은 감면조례에 의한 과세면제 대상이 되고, 조합원 명의로 이전하는 때에는 신탁종료 또는 해지로 인한 신탁재산 이전으로 비과세되어,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혀 과세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주택조합 명의로 신탁등기하는 때에는 과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 2. 주 요 골 자

가. 주택조합이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로 주택을 취득하는 때에는 주택조합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하고자 함.  
(안 제17조)

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조합원이 분양받는 때로 하여 일반주택 조합과 과세형평이 유지되도록 함. (안 제17조)

### 3. 검토 의견

본 안건은 주택조합을 구성하여 주택을 구입하면서 주택조합이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 주택조합은 감면조례에 의하여 과세면제 대상이 되고, 그 조합원은 신탁의 종료해지로 인하여 지방세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할 수 없는바, 결과적으로 주택조합과 조합원 모두가 비과세가 되는 모순이 발생되어 주택조합이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로 주택을 취득하는 때에는 주택조합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조합원이 분양받는 때로하여 일반주택조합과 과세형평이 유지되도록 하려는 내용임.

결과적으로 본 개정안은 주택조합이 신탁법에 의해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 조합과 조합원 양자모두가 비과세가 되는 문제점이 있어 신탁등기하는 주택조합에 대해서는 과세를 한다는 내용이 되겠음.

따라서 금번 개정안은 신탁법에 의한 지방세 감면상의 모순을 개선하려는 내용으로써 지방세의 과세형평 측면에서 그 개정의유가 있다고 보겠음.